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주)탄탄한기업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8012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8.02.1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12.19

##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층 329호(천호동, 대우 한강 베네시티)		
대표전화	1644-8839	대표 F A X	0503-8379-6076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 번호	운영팀 1644-8839	대표 메 일	gb@tantanhan.co.kr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팔도대패

---

---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별첨 서류

---

---

# 팔도대패

## 1. 당사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탄탄한 기업	팔도대패 외1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664, 3층 329호(천호동,대우한강베네시티)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22.12.02	2022.12.02	양동모	1644-8839	0503-8379-6076
	법인등록 번호	110111- 8491675	사업자등록번호		820-87-02873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탄탄한기업	팔도대패 외 1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층 329호(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특수관계인 (임원)	양동모 (대표이사) 김미라 (사내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양동모	1644-8839	0503-8379-6076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계열회사	(주)해가족	해밥 외5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27호(천호동, 대우 한강 베네시티)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양동모	1644-8442	02-2038-8446
	법인등록번호	110111- 6147543	사업자등록번호	594-87-00525

# 팔도대패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해가족	갯벌의 조개	2023. 6.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27호(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양 동 모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주)해가족	팔도소갈비	2025. 6.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27호(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양 동 모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팔도대패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 육류를 일정한 판매가격으로 무한 제공하는 외식업
상호	팔도대패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가맹점 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번호 : 40-2025-0087450(출원중) 43류
		출원번호 : 40-2025-0079722(출원중) 43류
		출원번호 : 40-2025-0081647(출원중) 43류
		출원번호 : 40-2025-0117705 등록번호 : 40-2469907-0000 43류

# 팔도대패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87,543	88,011	-467	0	-10,216	-10,467
2023년	1,963,024	2,097,789	-134,765	2,170,677	-76,946	-134,297
2024년	1,857,323	865,438	991,884	8,717,549	1,125,461	1,037,980

###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양동모	2022.12.~현재	[주]탄탄한기업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8.3.~현재	[주]핵가족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김미라	2022.12.~현재	[주]탄탄한기업 사내이사	경영지원
		2018.03.~현재	[주]핵가족 사내이사	경영지원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	13

# 팔도대패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또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핵가족	가맹사업 경영	2016.07.~현재	핵스테이크 (등록번호 : 20160417)라는 영업 표지의 서양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핵가족	가맹사업 경영	2020.01.~현재	핵밥 (등록번호 : 201200463)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핵가족	가맹사업 경영	2017.02.~현재	핵도그 (등록번호 : 20170219)라는 영업 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핵가족	가맹사업 경영	2019.05.~현재	핵떡 (등록번호 : 20171124)이라는 영 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핵가족	가맹사업 경영	2016.08.~현재	핵커피 (등록번호 : 20160054)라는 영업 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탄탄한기업	가맹사업 경영	2023.04.~현재	갯벌의 조개 (등록번호 : 20190659)라는 영업 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탄탄한기업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개시예정	팔도대패 (등록번호 : 20180120)라는 영업 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팔도대패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건본	분류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43류	출원일 2025.05.22.	출원번호 4020250087450	주식회사 탄탄한기업	출원중
 (상표권)	43류	출원일 2025.05.12.	출원번호 4020250079722	주식회사 탄탄한기업	출원 중
 (상표권)	43류	출원일 2025.05.14.	출원번호 4020250081647	주식회사 탄탄한기업	출원 중
 (상표권)	43류	출원일 2025.07.03. 등록일 2025.12.08.	출원번호 4020250117705 등록번호 4024699070000	주식회사 탄탄한기업	2035.12.08.

- \*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출원자로부터 [팔도대패]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일부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아(출원 상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 중 일부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팔도대패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팔도대패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 6. 팔도대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탄탄한 기업	갯벌의 조개	20190659	한식	-	7/1	48/1
		팔도대패	20180120	한식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핵가족	핵스테이크	20160417	서양식	8/2	5/1	4/1
		핵도그	20170219	피자	-	-	-
		핵떡	20171124	분식	19/1	17/0	-
		핵밥	20200463	일식	138/1	115/1	106/3
		핵커피	20160417	커피	1/0	1/0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 팔도대패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2024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지역	가맹점 수	2024년 평균 매출액						비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8. [팔도대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팔도대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	-

## 9.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팔도대패

당사에서 [2024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	-
판촉비	-	연중	-	-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서울영업부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28 1층 농협은행 서울영업부	02-483-2711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은행에서는 농협은행 가상계좌에 입금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입금을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수입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은 대리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여 본인이 직접 농협은행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항 목	내 용
농협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nhbank.com) 접속 → ② (기업)클릭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가맹금예치제도)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클릭 → ⑥ (가맹금예치금 예치)클릭 → ⑦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⑧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 → ⑨ 가맹금예치 완료
농협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농협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다만, 계좌가 기존에 없는 경우 매장에 직접 방문만 가능
계좌 개설 시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 팔도대패

필요 서류	개설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	---

\* 농협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는 매장 업무시간 (09:00~16:00)에만 가능하며 휴일 및 토요일에는 불가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라 예치은행을 활용하지 않고 (주)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여 귀하의 예치가맹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 (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탄탄한기업 / 팔도대패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

# 팔도대패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팔도대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건비, 판관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VAT 포함)	지급기한	비고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 시	가맹점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상표 및 영업표지 사용과 프랜차이즈 시스템 등의 활용에 대한 승인 대가)
교육비	5,500		개점 전 필수교육(조리 및 운영교육)

#### 2)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가맹계약 체결 시	1) 가맹본부에게 채무 존재 시 상계 후 반환 2) 계약종료 시 원상회복 비용 : 간판, 디자인 등 영업표지 제거 미이행시 조치 후 잔액 반환	

# 팔도대패

###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8,500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132㎡기준 (약 40평)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10,965	274.1	실행 후에는 반환이 안됨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협력업체	6,600	165	시공 이전	165만원 (3.3㎡당)
간판	본사	880	22	시공 이전	사인물 별도
설계도서비	본사	165	4.1	실시 전	실측 및 도면작성비
가구	본사	515	12.9	공급 이전	
주방장비/시 설, 주방 및 홀 기물	본사	1,980	49.5	공급 이전	-
POS 등	본사	165	4.1	공급 이전	-
오픈지원비	본사	220	5.5	공급 이전	
초도물품	별첨1_1/ 별첨1_2 참고	440	11	공급 이전	-
별도금액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등	철거, 화장실, TV 및 냉난방기 등 전자제품,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 공사 및 증 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인터넷 및 전화, 음향설비, 덕트공사, 놀이방 및 개점준비물, 육류장비(워크인 냉장고 및 육절기 등), ※ 점포면적에 따라 투자비는 변경될수 있 습니다.			매장상황 및 접수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팔도대패

-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규모, 입점상권 또는 지역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위 표 항목 [정보공개서 V-1-1)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시공 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공사도면'(외부도, 평면도, 입면도, 천장도 및 시설 등에 대한 도면 등)의 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공사도면'의 작업비용과 공사과정에 대한 '관리와 확인 비용'으로 3.3㎡ 기준 22만원(부가세 포함)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 표의 '설계도서비'는 중복 지급이 되므로 이를 제외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직접 시공을 통해 점포의 인테리어를 완료한 경우 가맹본부의 최종 승인 후 개점할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가맹점 입지 선정의 과정, 기준, 주체
가맹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본부는 상담을 통해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개설지역, 총 투자자금, 매장 유형 선호도, 가맹희망자의 창업이유, 개인성향, 투자 기대수익률 등 파악.</li> <li>○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출점기준(선호 상권/입지) 기준을 설명하여 가맹희망자가 이에 적합한 점포들을 찾아보도록 안내함.</li> <li>○ 가맹희망자가 제안한 점포들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는 사전분석, 현장 조사, 출점 가능여부 체크해서 매물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판단을 하거나 추가 매물을 찾아보도록 설명함.</li> </ul>
또는 가맹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희망자가 스스로 본인의 투자자금 범위 및 개인적 성향에 비추어 해당 점포가 적합할지에 대해 현장 조사 및 판단할 기회를 드려 가맹희망자가 주체적으로 선정토록 가맹본부는 협조함.</li> <li>○ 최종 선택은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투자자금, 개인적 성향, 출퇴근 거리, 관리적 요소, 창업 기대목표 등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가 주체적으로 선정.</li> <li>○ 가맹희망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점포에 대한 가맹본부의 출점 승인은 가맹희망자가 제공한 정보와 선택한 점포를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영업을 가능한 곳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맹점의 매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li> </ul>

# 팔도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 성공은 상권과 입지의 면도 중요하지만, 가맹점 오픈 이후 본사의 매뉴얼, 영업방식, 판매방식 등의 준수, 점포의 청결 및 위생관리, 고객관리 및 자발적인 점주의 마케팅 노력과 점주의 노력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음을 가맹점사업자는 확인해야 함.</li> <li>○ 가맹점의 입지 선정과 출점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임.</li> </ul>
--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프랜차이즈 사업과 본 브랜드의 특징을 이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강, 환경, 경영 능력을 가진 자	상담과정에서 본사가 판단
종업원	가맹점의 판단하에 적법하게 채용	미성년자 제외(기타 가맹점 판단)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팔도대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팔도대패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행사별로 부담 등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광고/판촉 동의 또는 약정서 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b>A. 정상 로열티:</b> 매월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 (현금매출액+카드매출액)의 5.5% <b>B. 구입권장품목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구매 시 :</b> 매월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현금매출액+카드매출액)의 2.2%	익월 10일 당사에 지급	영업표지의 사용대가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B. 구입권장품목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구매"에 해당하는 공급품목은 본 정보공개서의 (별첨1\_1. 물품 구입의 별첨1-1\_권장)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4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팔도대패

(단위 : 천원, VAT미포함)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입비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입비(10년 후 신규 가맹계약서상 가입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도대패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가맹점사업자의 책임하에 포괄적인 양도의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당사에 가입비를 제외한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실비성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양도자는 분명히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등 가맹점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허위나 과장하여 양수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맹점의 양도과정에서 이전 가맹점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양수인이 신규로 가맹점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실비성 비용은 물론 가입비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권 양도 사유 발생 → 가맹본부에게 30일 전 서면 통지 → 당사 운영팀 검토와 가맹점 양수자 면접 → 양도자가 제공한 매출 등 중요 운영상태 정보 부합성 확인 → 양도 적합성 판단 → 가맹계약서 및 양도 계약서 등 작성 → 교육비, 보증금, 기타 실비성 비용, 필요 시 실비 및 가입비 지급 → 개점교육 → 양도 완료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지체 없이,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간판 등 외부 영업표지 및 영업 표지가 들어간 내부 시설물, 기자재, 상품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대여한 설비, 전산시스템, 가맹본부가 제공한 메뉴, 운영 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에 관계된 문서 기타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는 등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②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전화번호 등록(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기타 온라인, 모바일, 배달앱 상의 검색 삭제와 매장 전화번호 등록)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하며, 온/오프라인에서 “구)팔도대패” 또는 “전)팔도대패”라는 표현의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③ 귀하가 원상복구 책임을 다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미지급 채무에 대한 정산, 원상복구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 후 “점주”에게 이를 반환합니다. 다만 가맹계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이 지급이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 팔도대패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 번	품 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팔도대패]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팔도대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팔도대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팔도대패

## 3. 메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 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구성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계약기간 중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 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뉴 제조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메뉴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메뉴의 제한	위반 시 책임
별첨 2의 메뉴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메뉴 또는 원/부재료의 판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메뉴 및 **별첨1.1 또는 정보공개서V-1-1) 품목 중 거래상대방 강제품목**을 귀하의 점포 외의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별첨2. 메뉴명 및 판매가 참고)

귀하가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상품 판매의 매출이익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가맹점 간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여 인근 또는 전체 가맹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판매가격에 대한 통일성을 해치고 전체 메뉴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를 하락시키며 전체 가맹사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의 목적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 원부자재의 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 비용의 지속적 상승, 가맹점의 판매이익률 증대, 가맹본부의 원부자재 공급가격 변화 등으로 인해 별첨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달 및 포장 판매에도 모든 메뉴의 판매가격은 매장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배달 및 포장 판매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설정하여 권장하는 경우, 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할인정책 등 - 가맹점사업자가 홀, 배달, 포장 등의 판매형태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본사에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팔도대패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 육류를 일정한 판매가격으로 무한 제공하는 외식업	팔도대패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설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 ■ 일반적 상권

설정기준	원칙 : 가맹점의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의 통해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함. 이 경우 "점주"의 영업지역은 반경 500m의 전체면적보다 최소한 넓게 설정)
설정방법	네이버, 카카오맵 등 포털 사이트 지도로 영업지역을 표기함 (지도별첨)
거리개념	500m - 포털 사이트 지도상 점포 중심으로 직선 반경을 의미함 (설정된 반경 밖에는 점포를 출점할 수 있음)
설정된 영업지역 보호방식	계약기간 중 설정된 영업 지역 내에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 육류를 일정한 판매가격으로 무한 제공하는 외식업과 동일한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음

#### ■ 특수상권 등

설정기준	<p>특수상권의 경우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 별도 협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li> <li>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li> <li>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li> <li>4. 서울 도심의 복합 상권(번화가상권, 역세권상권, 복합쇼핑몰상권, 대학가상권, 오피스밀집상권, 유흥가밀집상권, 쇼핑거리상권, 아파트밀집상권, 주요관공서인근상권, 대형병원상권 등)</li> <li>5. 제4호과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복합상권 등</li> <li>6. 기타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쇼핑몰, 푸드코드,</li> </ol>
------	--

# 팔도대패

	시장, 지하상가, 종합병원, 대학교, 역사, 터미널 내 상가, 공항, 호텔, 15층 이상 대형빌딩의 로비 또는 식당가 등
<b>설정방법</b>	네이버, 카카오맵 등 포털 사이트 지도로 영업지역을 표기함 (지도별첨)
<b>설정된 영업지역 보호방식</b>	계약기간 중 설정된 영업 지역 내에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 육류를 일정한 판매가격으로 무한 제공하는 외식업과 동일한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음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및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90일 사이 통보)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계약기간 만료 전 60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 영업지역 변경 완료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 가맹점의 판매 및 영업활동과 영업지역간의 관계

<b>※ 점포의 형태를 불문하고(홀, 포장, 배달 등) 제한하지 않음</b>
영업지역 설정의 의미는 계약기간 중 설정된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개설 또는 직영점 개설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에서만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 영업지역 설정의 의미는 계약기간 중 설정된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개설 또는 직영점 개설 등의 물리적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매 및 영업활동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즉, 모든 가맹점들은 TV/라디오/신문(지역 케이블 방송, 지역 라디오, 지역 신문), 지역의 주요 광고 홍보 판촉 매체(아파트 미디어 보드광고, 전단지 판촉 등, 각종 오프라인 판촉행사 등)등을 통해 영업지역의 제한 없이 자율적인 판매/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부분에 대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당사는 위의 "마케팅 측면에서의 영업지역 보호"와 같은 개념으로 가맹점의 배달 판매 및 영업활동에 대해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단, 현재 배달 영업지역은 현재로서는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달 영업지역의 설정

# 팔도대패

필요성이 유의미하게 발생하거나 가맹사업법의 변경, 지나친 배달 경쟁으로 인한 가맹점들 간의 갈등과 피해 발생, 자기 배달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가맹점들의 신규 출점의 불합리한 방해, 기타 이와 관련된 분쟁들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향후 가맹본부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기존 가맹점들을 포함하여 배달 영업지역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배달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본사는 배달앱 등 판매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점주"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본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3. "점주"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팔도대패』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점주"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팔도대패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가맹점 총 매출액)	기타 오프라인 (직영점 총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팔도대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개점일로부터 [3년]입니다.
-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씩 연장됩니다.

###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팔도대패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50조 (계약의 해지) (다음 사항중 "본사"는 가맹본부를, "점주"는 귀하를 의미합니다.)

- ① "본사"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가맹점을 양도, 상속, 전대를 하거나, 가맹계약에 명시된 업종 이외의 영업활동 및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② "본사"의 승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인을 바꾸거나, 실제 운영주체가 바뀌는 경우
- ③ 제55조 (경업금지)의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④ "본사"에 미수금액이 발생하거나 지정된 공급(물류)업체에 미수 금액이 발생하여 물품의 공급이 2회 이상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는 경우

## 팔도대패

- ⑤ 가맹계약기간 중 "본사"에 대한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넘어 지정된 날짜까지 계약이행보증금의 원금을 복원하지 못하는 경우
- ⑥ 제38조 (가맹점 운영과 판매·영업의 표준화) 제1항, 제3항, 제7항, 제8항에 관하여 "점주"가 부당하게 그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본사"로부터 2회 이상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
- ⑦ 공급받은 원·부재료 관리소홀과 위생상태 불량으로 2회 이상 "본사"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경우
- ⑧ 계약내용, 운영방침, 매뉴얼에 대한 "점주"의 불이행이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 ⑨ "점주"가 제30조 (판매상품의 준수와 변경)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본사"의 승인 없이 판매상품들을 삭제, 수정,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⑩ "점주"가 제31조 (권장가격의 준수와 변경)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본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가격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⑪ 조리매뉴얼, 판매 및 영업방식, 고객 서비스(고객과 대면 접촉에서 발생하는 모든 언어적 시각적 서비스 행위. 유니폼 착용 등도 포함) 등의 미준수 또는 불량으로 "본사"로부터 개선조치를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 ⑫ "점주"가 제29조 (자점 매입금지와 일정한 품질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통해 제3자와 거래한 경우
- ⑬ "점주"가 "본사"가 공급하지 않은 원·부재료 등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⑭ "점주"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의 훼손과 가맹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자신의 가맹점에만 국한된 일방적 요구나 이익제공을 "본사"에게 요구하여 "본사"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2회 이상 거절하는 경우
- ⑮ "점주"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등의 교육과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사"가 실시하는 교육, 훈련, 경영지도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 ⑯ 가맹계약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 불만의 소리가 접수되어 "본사"가 이를 시정해 줄 것을 2회 이상 권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무시 또는 거부하며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 ⑰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쳐 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 ⑱ 제38조 (가맹점 운영과 판매·영업의 표준화)의 제4항, 제7항, 제8항과 관련하여 "점주"가 표준적인 월 운영일과 일 운영시간에 대해 "본사"와 협의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단축시키는 경우

## 팔도대패

- ①9 "점주"가 "본사"와 협의 없이 가맹점을 3일 연속 개점하지 않거나 "점주"가 연락두절로 "본사"의 공지사항의 전달이 2주 이상 불가능 또는 공문의 서류가 2회 이상 반송되어서 오는 경우
- ②0 "본사"가 진행하는 광고와 판촉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협의된 비용분담에 대해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 ②1 "점주"가 점포환경개선에 대해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 ②2 "본사"의 노하우, 영업비밀, 가맹사업에 중요한 사안들, 가맹본부에 관련된 정보를 "본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을 하는 경우
- ②3 "점주"가 제3자나 다른 가맹점과 접촉하여 해당 가맹사업의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가맹사업 및 운영에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얘기로 "본사"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
- ②4 "점주"가 "본사" 동의없이 영업표지를 허용된 사용범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점포의 간판, 인테리어, 시설 및 장비를 "본사"의 동의 없이 추가, 삭제, 변경하는 경우
- ②5 "점주"가 제39조 (포장과 배달 판매·영업활동)의 주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②6 "점주"가 제40조 (복장, 품위유지, 고객서비스)의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②7 "점주"가 "본사"의 임원과 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등에게 비정상적인 요구나 폭언, 협박, 위협, 비인격적 대우 등의 언행을 하거나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그들에게 유사한 행위를 하여 "본사"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②8 제33조 (POS 기기 및 매장 설치물) 제1항을 위반하여 "점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사"가 지정한 POS 등 설비 및 기기를 구비하지 않거나 또는 "점주"의 상황으로 개별 POS 사용 시 제41조 (회계·매출자료 작성과 열람, 주요 보고의무)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②9 정당한 사유없이 "점주"가 제49조 (계약 수정과 그 사유)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 ③0 정당한 사유없이 "점주"가 제45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변경, 통지 등) 제1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 ③1 "점주"가 제45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변경, 통지 등) 제2항의 권장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본사"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 ③2 정당한 사유없이 "점주"가 제46조 (구입강제품목의 가격과 그 산정방식의 변경 등)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메뉴 등 사업정책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 팔도대패

- ㉓ 정당한 사유없이 "점주"가 제48조 (거래조건 변경협의)의 과정을 비협조, 방해, 거부하여 거래조건 변경 협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㉔ 합리적 사유 또는 개인적 귀책사유로 제28조 (대금 결제와 공급조건) 제4항을 위반하여 물품공급이 2주 이상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은 경우
- ㉕ "점주"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접촉하여 구입강제(권장)품목의 미사용 제안, 사립 물품 사용 제안, 조리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들의 거부 등과 같이 "본사"의 사업정책에 반하는 권유, 제안, 재촉의 행위에 대하여 "본사"가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
- ㉖ 객관성이 결여된 허위 사실 또는 주관적 의견을, 본사와의 확인없이, 임의로 제3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달하여 "본사" 또는 브랜드의 명성과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본사"와의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팔도대패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과정에서 계약 수정 사유
1) 가맹사업법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변화,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 변화 및 불일치로 통일적인 가맹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유의미하게 발생한 경우.
2) 가맹본부의 중요한 경영방침과 운영방침의 변화, 주요 매뉴얼의 변경, 기타 가맹사업의 합목적성 및 브랜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맹점들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가맹점들의 가맹계약서의 중요 내용들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입비, 교육비, 오픈지원비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위임인은 교육비(550만원, VAT포함)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팔도대패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아래 표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가 동일한 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종료일(해지일) 후 6개월 이내에 경업금지	경업금지(동일한 업종 금지) :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 육류를 일정한 판매가격으로 무한 제공하는 외식업 팔도대패의 메뉴, 레시피, 디자인, 인테리어, 운영 매뉴얼 등을 이용해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를 통해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의 명의로 변경 후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종사할 경우에도 해당됨)	계약기간 중과 계약종료 후: 전국 전 지역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팔도대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A타입	11:00~22:00 이상	월1회 휴무 가능 (월 28일 이상 영업 원칙)	1. 영업시간은 자신의 상권이나 입점해 있는 건물의 정책에 따라 3가지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영업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2. A타입과 B타입의 구분기준은 점심영업의 여부 3. C타입은 본사와 협의 필요
B타입	16:00~22:00 이상 (최소 6시간 영업 원칙)		
C타입	24시간 영업 또는 A타입 및 B타입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시간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132㎡기준	직접 근무 여부
협의	직접 근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	----

# 팔도대패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정소현황 등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팔도대패]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및 지역별 광고	브랜드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전국 및 지역별판촉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팔도대패

##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가맹계약서 제 2 조 15 호 참조)	기간
<p>“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에 의해 비밀로 관리된 레시피, 매뉴얼, 매장운영방법, 고객응대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디지털 문서를 포함한다) 등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가맹점의 구조, 내·외장, 가맹점 내 배열, 가맹점의 설비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li> <li>나. 각종 메뉴의 조리 노하우 및 레시피</li> <li>다. 각종 공급품 등의 구입처</li> <li>라.接客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li> </ul>	<p>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p>

- \* 귀하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되거나 수령한 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및 문서, 그리고 공급품목 및 공급업체, 디자인물 등의 정보와 가맹사업 활동에 관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복사, 인쇄, 유출, 발설, 공표, 공유하거나 귀하의 매장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귀하는 가맹계약 해지, 종료 시에는 반드시 당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문서를 반납하고,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남겨진 자료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 \* 귀하는 영업비밀에 대한 사안은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동조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내외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팔도대패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다음 사항중 "본사"는 가맹본부를, "점주"는 귀하를 의미합니다.

- ① "점주"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는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위약별로 1일 일십만원(₩100,000원)씩 "본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 ② "점주"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과 별도로 "점주"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점주"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부가세 별도) x 5% x 잔여기간(월)] 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본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금이천만원(₩20,000,000)을 위약금으로 한다.
- ③ "점주"가 가맹계약서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점주"는 "본사"에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점주"가 가맹계약서 제9조를 위반하여, "본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점주"는 "본사"에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점주"가 구입강제품목에 관하여 가맹계약서 제26조 (주문과 하자 관리) 제1항과 제29조 (자점 매입금지 및 일정한 품질기준의 준수)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점주"는 "본사"에 위약별로 금팔백만원(₩8,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점주"가 가맹계약서 제11조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권 부여) 제1항 및 제4항과 제30조 (판매상품의 준수와 변경)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점주"는 "본사"에 위약별로 금팔백만원(₩8,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점주"가 가맹계약서 제21조 (로열티)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점주"는 "본사"에 위약별로 금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점주"가 가맹계약서 제15조 (개점 승인과 점포의 임대차 확보) 제2항에 따라 점포의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점주"는 "본사"에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고 때에 따라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⑨ "본사"의 지급요청일에 "점주"가 위약금 또는 위약별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타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본사"에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주"는 연 이율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⑩ "본사" 또는 "본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주"는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⑪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중에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개인적 사유로 일방적으로 연속하여 7일 이상 운영을 중단, 휴업, 폐업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개인적 사유로 가맹점을 파행적으로 운영(월 기준으로 15일 영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하는 경우, "점주"는 "본사"에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팔도대패

- ⑫ 가맹점이 귀책사유로 폐점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 당사와 별도 약정을 통해 지원받은 광고 및 판촉비, 지원금 등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별도로 당사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별도 약정서 내용에 따름).
- 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의 개점하기 전까지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적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의 대가로 "본사"는 해당 기간동안의 전체의 금전적 및 시간적 비용과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한 비용으로 금팔백만원(₩8,000,000)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⑭ "점주"가 가맹계약서 제50조 (계약의 해지) 35호 또는 36호를 위반하여 "본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본사"는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2. 가맹사업 특성에 따른 유의사항

- ① 무한리필 업종은 통상적인 외식 브랜드들보다 원가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한리필 업종은 업종 특성상 직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과 같은 매장 운영비용의 관리적 요소와 경영자의 운영능력에 따라 매장의 매출과 이익 수준이 가맹점마다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② 무한리필 업종은 지역 상권의 특징, 개별 가맹점의 이용 고객층, 프로모션 진행, 그리고 가맹점의 매출 수준에 따라 실제 원가율과 운영의 이익률이 개별 가맹점마다 차이가 의미하게 날 수 있습니다.
- ③ 팔도대패는 고기를 직접 조리·구워 섭취하는 업종 특성상 연기·냄새가 상당 수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점주"에게 표준 인테리어, 환기·배기 설비, 그리고 냉난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나, 건물 구조, 층고, 건물의 특징, 건물 설비 제한, 공기 흐름(공기 역학) 등 "본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따라 실제 배기 및 환기의 효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주"는 임차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시, 해당 건물 및 점포의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구조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배기 성능 차이에 대하여 본사에 그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콜레라, 인플루엔자 등 가축들의 질병과 환율 급변동, 국내·외 축산 시세 변동, 기타 육류의 수급 불안 등 외부 요인에 의하여 가맹점에 공급되는 물류 공급가격(고기값 등)이 크게 또는 빈번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원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체 육류로 공급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할 것입니다.

# 팔도대패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	53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14일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1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공사 착수	공사 실시	30일	
교육실시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3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소모품 등 입고 -식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팔도대패

##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팔도대패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비용</li> <li>▶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li> <li>(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lt;분할지급 시 절차&gt;</li>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li> <li>(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 팔도대패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내용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 팔도대패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팔도대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 전)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본사, 직영점, 가맹점)	7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필수 교육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550만원 (VAT포함)	필수 교육
당사 필요 시 정기교육 또는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 교육
점주(종업원 포함)교육	메뉴 제공방법 및 점주(종업원 포함) 제반 교육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교육	1일 (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0만원/1일 (비용 협의)	관리자 지정/교체 시(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 필수 교육

###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으나 해당 교육의 숙련도 및 이수 정도의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귀하(교육내용에 따라 귀하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는 당사가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재교육과 함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재교육 비용을

## 팔도대패

---

---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메뉴 교육 외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팔도대패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순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02-2038-84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팔도대패

---

---

## 별첨1\_1. 물품 구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팔도대패

##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원, VAT 미포함)

순번	품목명(단위)	거래형태	공급단가		거래상대방
			상한	하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팔도대패

---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가명사업 예정으로 해당없음.

---

---

# 팔도대패

## [별첨 2. 판매상품 리스트]

[기준일 : 2025년 10월]

상품 또는 서비스명	권장가격(단위 : 원)
프리미엄 무한대패	17,900원
(점심특선)프리미엄 무한대패	15,900원
어린이전용 무한대패(8~10세)	10,000원
어린이전용 무한대패(5~7세)	8,000원
물냉면	4,000원
비빔냉면	4,000원
계란찜	4,000원
된장찌개	3,000원
무한소주(19세 이상)	5,000원

## 팔도대패

---

---

### [별첨 3.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증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팔도대패

## [정보공개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주소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문서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자필 확인	아래 빈칸에 "( )의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받았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해주세요		
	( )의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받았습니다.		

※ 유의사항

-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제공받은 장소, 자필 확인을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가맹본부)

상 호 : / 영업표지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가맹점사업자 : (인)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 팔도대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합니다.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예정지 :      시      구      동)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 제공시점에 계약 해지, 종료, 폐업한 가맹점은 제외됨

■ 본 문서를 정보공개서와      년      월      일 함께 제공받았습니다.

제공일자 :      년      월      일

본 문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

상      호 :                                      / 영업표지 :

(가맹점사업자) :

(인)  
[정보공개서 등 자문확인서]

